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5일, 김민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9.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민전의원)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
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연수휴직

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연수휴직 횟수를 재직중 1회로 한정하고 있어 교원들의 학위 취득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에 따라 연수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교육공무원이 연수휴직의 분할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적정 기간으로 나누어 2회 이상 사용하는 등 연수휴직 활용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에서 연수휴직의 허가는 임용권자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에 해당되므로, 실제 연수휴직 허가는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사정,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연수의 효과, 연수(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서지영의원, 김민전의원, 박성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